

한국도로공사 안전신문고

위험하다면, 누구나 익명으로 두드리세요!



**안전
신문고**

이용방법

- 1 휴대폰 카메라를 실행하세요.
- 2 카메라로 QR코드를 비춰주세요.
- 3 화면에 나타나는 링크를 눌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익명으로 참여하세요.
- 4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위험요인을 신고해주세요.

※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.



R&D본부(정보보안센터) 안전신문고



급박한 위험상황에는 NO!라고 외치세요!



【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】

- ✓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, 작업을 중지·대피 가능
- ✓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장에게 보고
- ✓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